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19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재판경과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1981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나237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가단109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A

피고, 피상고인B

판결 선고 2015. 2. 26.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나23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청구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또는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